



제391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생산위탁 시 지원〉
■곽상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382호)

2021.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광상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1. 9. 2.
3. 회부연월일 : 2021.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혜택이 기업의 이전을 유발할 정도로 크지 아니하여 실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의 정도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9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기업에 제품·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와 ②비수도권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u>지방이전</u>)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 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u>지방으 로 이전하는</u>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 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u>지방이전 등</u>) ① ----- ----- ----- ----- <u>다음</u> <u>각 호에 해당하는</u> ----- ----- --.
<신 설>	1.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 설>	2. 지방에 있는 기업에 제품 또는 서 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있는 기업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 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 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 재정적·행 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과 함께 2004년부터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¹⁾

동 보조금은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투자액에 비례하여 입지·설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절차임.²⁾

[표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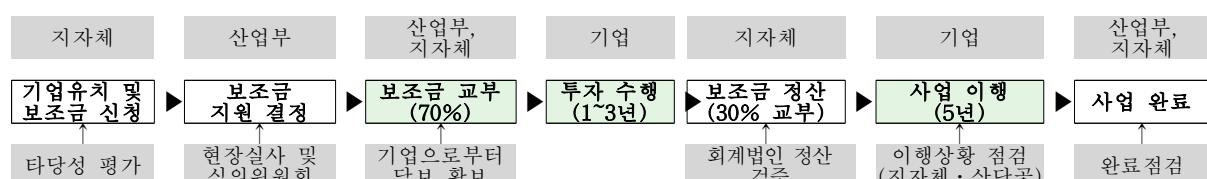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수도권 인접지역	- (설비) 3%	- (설비) 5%	(입지) 9% (설비) 7%	45 : 55
일반지역	- (설비) 5%	(입지) 10% (설비) 7%	(입지) 30% (설비) 9%	65 : 35
지원우대지역	- (설비) 8%	(입지) 20% (설비) 11%	(입지) 40% (설비) 14%	75 : 2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설비) 11%	(입지) 25% (설비) 19%	(입지) 50% (설비) 24%	75 : 2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경과>

수도권기업 지방이전(2004년~) → 지방 신·증설(2011년~) → 국내복귀기업(2012년~) →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2016~2019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년~) → 상생형지역일자리(2020년~)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진행 절차>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의 혜택이 기업 이전을 유발할 정도로 크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도권 기업) 및 수탁(비수도권 기업) 기업에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정책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업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이 기업의 지방 이전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³⁾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지방이전 관련 정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이하 생략)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업’인 수도권 기업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수도권 기업의 생산위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나(안 제19조제1항제2호 신설),

기업의 생산위탁은 아웃소싱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탁기업’에 국가가 지원하게 되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의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생산위탁 자체가 지방의 신규 투자 및 고용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지 등 수도권 기업 지원의 효과에 대한 검증 문제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 소재 위탁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안 부칙 제2조(제품 등 생산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에서 법 시행 이전 생산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 소요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 등 생산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의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기업의 지방 이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도권 기업의 생산위탁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방기업이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행법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의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기업의 설비 신·증설’의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시행 2021. 1.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71호, 2020. 11. 2., 일부개정]